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00동 000-00번지 신축 의료시설 출입구 설치 관련 피해 민원

□ 신청 취지

- 00동 000-00번지 신축 의료시설 진출입로의 설치계획이 00로 000길 막다른 길로 되어 있어 해당 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피해 및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진출입로 설치계획을 00(대)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, 만약 진출입로 설치계획의 변경이 불가할 경우 주민생활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골목길 확장을 포함한 연결도로망의 재정비를 요청

□ 사실관계

- 신축 의료시설 주진출입로로 계획된 00로 000길은 길이 약 41m, 계획도로 폭은 약 6m의 막다른 도로임
- 00(대)로 방면 출입구는 00구 건축심의회 심의 결과, 응급차량을 위한 출입구로만 이용하고 일반차량은 이용 불가
- 00(대)로 방면 출입구에는 보행로, 가로수, 전신주 및 통신주, 교통시설물, 신호등, 소화전, 가로판매대 등이 존재하고 있음
- 문제점
 - 00로000길 0-0건물은 00로000길이 조성되기 전인 1974년 준공된 단독주택으로, 경계선에서 약 40cm정도 도출되어

- ○ ○ 로 ○ ○ ○ 길 을 점 유 하 고 있 는 것 으 로 판 단 됨
- ○ ○ 로 ○ ○ ○ 길 초 입 부 분 에 고 압 전 신 주 와 차 량 주 출 입 구 부 분 에 통 신 전 신 주 가 있 어 차 량 통 행 에 어 려 움 이 있 을 것 으 로 예 상 함
- ○ ○ 로 ○ ○ ○ 길 계 획 도 로 의 폭 은 6m 이 고, 현 재 실 측 결 과 도 로 의 폭 은 5.4m~5.7m 로 계 획 도 로 폭 보 다 0.3m~0.6m 가 량 협 소 한 것 으 로 확 인 함
- 진 출 입 로 사 용 하 기 에 는 ○ ○ 로 ○ ○ ○ 길 노 면 포 장 상 태 가 매 우 불 량 함
- ○ ○ (대) 로 방 면 은 제 한 속 도 50km 의 6차 선 왕 복 도 로 와 보 행 로, 보 도 상 영 업 시 설 물 등 의 지 장 물 이 있 어, 주 진 출 입 로 로 설 치 및 이 용 시 진 출 입 차 량 으 로 인 한 교 통 체 증 유 발 과 교 통 사 고 발 생 의 위 험 이 있 음

□ 관계 법령 등

- 「건축법」 제44조 제2항(대지와 도로의 관계)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8조 제2항(대지와 도로의 관계)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5조 (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)

□ 판단 및 결론

- ○ ○ 로 ○ ○ ○ - ○ ○ 신 축 건 축 물 진 출 입 로 조 성 계 획 에 대 한 의견표명
- 상 기 사 항 에 관 한 법 규 및 ○ ○ 구 의 건 축 심 의 내 용 을 검 토 한 결 과 ○ ○ 동 ○ ○ ○ - ○ ○ 신 축 건 축 물 의 차 량 진 출 입 로 를 ○ ○ 로 ○ ○ ○ 길 로 조 성 하 는 계 획 은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시행령」, 「주차장법시행규칙」 및 건 축 심 의 회 의 결 정 을 준 수 하 는 적 절 한 계 획 이 었 다 고 판 단 되 나, 차 량 진 출 입 로 의 최 종 설 치 위 치 는 건 축 주 가 제 출 한 ‘○○(대)로로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서’에 대해 ○ ○ 구 건 축 심 의 회 의 심 의 와

관련 법규 등을 재검토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 허가부서에서 적의 결정하기 바람

- 다만 원안대로 ○○로○○○길에 진출입로를 설치할 경우, 건축허가부서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진출입로 상의 전신주 등 지장물 이설 및 도로포장 등 정비 조치가 사전에 이행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

○ ○○로○○○길 도로 폭 6m 확보 조치 권고

- ○○로○○○길○, ○○로○○○길○○ 건물 상이 도로 폭이 6m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, 해당 도로는 1976년 「건축법시행령」 제3조3의제2호의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후에 조성된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 폭보다 0.3m~0.6m 가량 협소한 것을 확인 함
- 이에 도로 폭이 감소한 원인을 확인하고, 6m의 도로 폭을 확보할 것을 권고